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24일, 윤승오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6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승오 의원

나.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41호, 2019. 8. 20.)」이 개정되었음

- 이에,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학교장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3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을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용어 변경함(안 제13조제3호)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가. 개정취지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사안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나. 주요내용

-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u>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u>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직원의 조치)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u>지체없이</u>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u>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u>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를 “지체없이” 로 개정함

학교의 장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하게 학교폭력사건을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본 조항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본조신설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3조제3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으로 개정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로 개정되었으므로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의2[개정 2019. 8. 20.]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교 폭력사건에 대하여 가해 및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3월 20일 개정되고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위원회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